

1. 개정이유

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법률 제19816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7. 19. 시행)됨에 따라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
상담기관의 장이 인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·구의 장 또는 읍·면의 장에게
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
으로 봄(제5조)
- 나. 「전염병예방법」을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면
서 ‘전염병’이 ‘감염병’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함(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중
- 라. 기 타 : 생략

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“영 제39조의2”를 “영 제39조의3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”를 “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1. 출생 및 기아발견

가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가족관계등록법”이라 한다) 제46조, 제49조, 제50조, 제52조에 규정된 자

나.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· 제14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단,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시 · 읍 · 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2. 사망 및 실종신고 : 제85조 · 제87조 · 제88조 · 제92조에 규정된 자 제15조 중 “전염병”을 “감염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「통계법」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(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구의 장 또는 읍·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생·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	제5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출생, 기아 발견, 사망 및 실종 신고 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제49조, 제50조, 제52조, 제85조, 제87조,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	1. 출생 및 기아발견 가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가족관계등록법”이라 한다) 제46조, 제49조, 제50조, 제52조에 규정된 자 나. 「 <u>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</u> 」 제11조·제14조에 따른 <u>지역상담기관의 장</u> 단, 「 <u>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</u> 」에 따라 시·읍·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

	<u>통보한 경우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</u>
2. 혼인, 이혼 및 혼인취소 : 당사자	2. <u>사망 및 실종선고 : 제85조 · 제87조 · 제88조 · 제92조에 규정된</u> <u>자</u>
② ~ ⑤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1. <u>영 제39조의2</u> 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<u>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</u> 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	1. <u>영 제39조의3</u> ----- ----- ---
제15조(특별조사) 국가데이터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, <u>전염병</u> 의 만연,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	2. <u>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</u> ----- ----- 제15조(특별조사) ----- ----- --- <u>감염병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
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
수 있다.

-----.